

[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]

사업연도	. ~	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(5)	법인명
※관리번호 <input style="width:20px;" type="text"/> - <input style="width:20px;" type="text"/>		사업자등록번호 <input style="width:20px;" type="text"/> - <input style="width:20px;" type="text"/> - <input style="width:20px;" type="text"/>	
※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.			
1. 공제한도액계산			
①국외원천소득총액	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	③감면비율	④차감되는 감면국외 원천소득(②×③)
⑤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 소득(①-④)			
⑥계 산 기 준		⑦계 산 내 역	
⑤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국외 산출세액× $\frac{\text{원천소득}}{\text{과세표준}}$		⑧공 제 한 도	
2. 공제세액계산			
⑨ 사업연도	⑩외국납부세액발생액	⑪ 기 공 제 액	⑫미공제액 (⑩-⑪)
			⑬당기공제액 (⑬≤⑧)
			⑭공제누계 (⑪+⑬)
			⑮이 월 액 (⑩-⑭)
당 기			
합 계			

22226-66811일
99.4.1.개정승인

210mm×297mm
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

작 성 요 령

1. 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기재합니다.
2. ③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에는 100%,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당해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.
3. ⑨사업연도란에는 직전 5개사업연도중 외국납부세액 발생분을 오래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로 기재합니다.
4. ⑩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는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고,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합니다.
5. ⑪기공제액란에는 전기 ⑭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6. ⑬당기공제액란에는 ⑫미공제액란의 금액을 ⑧공제한도란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순차로 기재합니다.
7.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⑥계산기준란의 산식중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또는 국외원천소득총액과 ⑩외국납부세액발생액란에 가산하여 기입합니다.

$$\text{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} \times \frac{\text{수입배당금액}}{\text{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} - \text{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}}$$